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14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법무법인(유한)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중철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1) 피고 C와 소외 E 사이의 2020. 9.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C는 소외 E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9. 15. 접수 제271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1) 피고 D과 소외 E 사이의 2023. 2. 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D은 소외 E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2. 6. 접수 제22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1) 피고 D과 소외 E 사이의 2023. 7.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D은 소외 E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7. 17. 접수 제2083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1) F은 2020. 2. 21. 채무자 E(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송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드단5147, 이송 후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드합10075, 2021드합10082(병합)], 채무자는 2020. 3. 5. 위 소장을 송달받았다.

2) 제1심법원은 2021. 12. 15. '채무자는 F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92,050,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 및 채무자가 항소하여 제2심법원은 2023. 1. 18. '채무자는 F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고 F과 채무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르1023, 2022르1035(병합),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채무자와 2020. 3. 5.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 소송업무에 대하여, 2021. 12. 30. 이 사건 이혼소송 제2심 소송업무에 대하여 각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채무자는 위 위임약정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6463호로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9. "채무자는 원고에게 30,505,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판결에 의한 약정금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채무자는 2020. 8. 28.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와 채무자는 이 사건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0. 9. 15.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9. 15. 접수 제271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채무자는 2022. 11. 2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와 채무자는 이 사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진 직후 2023. 2. 6.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2. 6. 접수 제22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후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7. 31. 접수 제21979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채무자는 2004. 4. 2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와 채무자는 2023. 7. 17. 채권최고액 7,5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D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7. 17. 접수 제2083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한 기존채권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와 같은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와 피고 C, D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피고 C 피고 C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 피고 D 피고 D은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E가 채무초과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20. 3. 5. 채무자와 이 사건 이혼소송 소송업무에 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은 2023. 1. 18. 이 사건 이혼소송 제2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성립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9. 15. 이후에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 당시 (가) 채무자의 소극재산 : 약 549,773,062원(아래의 채무 원금에 이 사건 약정금채권금액을 더한 금액)

○ 피고 D에 대한 채무 : 329,268,000원 및 위 금원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35,5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100,008,000원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118,76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소외 F에 대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채무 : 150,000,000원

○ 이 사건 이혼소송 별지4 재산분할명세표의 소극재산 : 265,097,727원(이 사건 이혼소송은 채무자의 혼인파탄 시점인 2020. 2. 21.경을 기준으로 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혼소송 당시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의 소극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C에 대한 채무 : 40,000,000원

(나) 채무자의 적극재산 : 512,430,892원

○ 이 사건 이혼소송 별지5 재산분할명세표의 적극재산 : 455,952,192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 2020. 9. 15. 무렵의 시가 56,478,700원

2)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 채무자의 소극재산 : 911,914,490원(= 431,815,959원 + 144,495,742원 + 265,097,727원 + 40,000,000원 + 30,505,062원)

○ 피고 D에 대한 채무 : 329,268,000원 및 위 금원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35,5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100,008,000원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118,760,000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 당시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431,815,959원¹⁾ ○ 소외 F에 대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채무 : 144,495,742원(경매사건에서의 소외 F의 채권계산서에 의함)

○ 이 사건 이혼소송 별지4 재산분할명세표의 소극재산 : 265,097,727원

○ 피고 C에 대한 채무 : 40,000,000원

(나) 적극재산 : 824,016,192원

○ 이 사건 이혼소송 별지5 재산분할 명세표의 적극재산 : 455,952,192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 61,801,3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 213,409,300원 (= 4,146,400원 + 8,326,500원 + 1,444,800원 + 199,491,600²⁾ 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 92,853,400원

3) 소결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채무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채권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한 것이며,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채무자와 형제관계에 있고 피고 D은

채무자와 오랜 기간 거래하여 온 거래상대방인 점, 피고 D은 채무자에 대하여 2014년경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된 이후에야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

별지

1) 아래와 같은 계산한 이자액을 모두 합산함

$$34,234,550\text{원} = 75,000,000 \times 3,250\text{일}/356\text{일} \times 0.05$$

$$8,226,825\text{원} = 35,500,000 \times 1,650\text{일}/356\text{일} \times 0.05$$

$$26,476,837\text{원} = 100,008,000 \times 1,885\text{일}/356\text{일} \times 0.05$$

$$33,609,747\text{원} = 118,760,000 \times 2,015\text{일}/356\text{일} \times 0.05$$

2) $199,491,600\text{원} = 30,800\text{원} \times 6,477\text{m}^2$ 감정결과에 의하여 논산시 I의 m^2 당 가격은

30,8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합병된 위 I 토지의 면적 $6,477\text{m}^2$ 와 곱하여 계산하였다.